

용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조례

제정 1991. 2. 4 조례 제1239호
개정 1996. 3. 1 조례 제 8호(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)
1996. 11. 27 조례 제 65호
2001. 12. 24 조례 제 372호
2005. 3. 15 조례 제 572호
2005. 10. 5 조례 제 623호(법무행정 처리 조례)
2009. 4. 24 조례 제100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민등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의거 용인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4. 24]

제2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이 법에 의하여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를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 한다. <개정 2009. 4. 24>

1.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 등에 관한 사항
2.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05. 3. 15]

제3조(지휘, 감독)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·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4. 24>

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·면·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3. 1>

용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조례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1996. 11. 27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. 12. 2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3. 1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부칙 <2009. 4. 24 조례 제100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